

상 환 방 법	<input type="checkbox"/> 최종 대출실행 후 최초 도래하는 대출개시 해당일부터 매()개월 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개월 동안 거치하고, ()년 ()월()일부터 매()개월 마다 (<input type="checkbox"/> 원금,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금액의 ()%, (금)을 대출(분할상환)기간동안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대출금액의 ()%, 금(원)]은 대출기간만료일에 전액상환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 자 지 급 방 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익일 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 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로부터 매()개월마다 이자를 상환하며 대출기간만료일에는 해당 이자계산기간 중 계산된 이자를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납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 자 납 입 일 (결 제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이자납입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이자납입일은 익영업일로 이연됩니다. (인 또는 서명)		
담 보 물 현 황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실 없음 임대금액(세대 만원)		
수 수 료 <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	1) 대출취급수수료 대출금액의 _____% 에 해당하는 금액 (금 원) ※ 최초 대출취급 시 1회 발생하며 대출금에서 은행이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대출 취급수수료 (제3조 “추가대출” 참조) (금 원) ※ 추가대출 실행시마다 발생하며 대출금에서 은행이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중 도 상 환 수 수 료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이내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금액의 ()%, ()년 이내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금액의 ()%, ()년 이내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금액의 ()%, ()년 이후 만기이전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금액의 ()%을 각각 적용합니다.	대출기간만료일까지의 잔존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 ()%, ()년 이상 ()년 미만인 경우 ()%, ()년 이상 ()년 미만인 경우 ()%, ()개월 미만인 경우 ()%을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각각 적용합니다.	
대 출 기 한 자 동 연 장 등	대출기간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기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은 “기한연기 및 금리변경 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기 및 금리변경 등을 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연기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제1조의 대출이자율은 다음의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되기로 합니다 .

① “은행내부기준금리부여신”이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대출개시일과 그 날로부터 제1조 대출이자율에서 약정한 금리변동주기에 해당하는 날 각각에 대해 은행이 고시한 은행내부기준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은 제1조 대출이자율에서 약정한 금리변동주기마다 별도의 통보없이 변경하기로 합니다. 은행내부기준금리는 변동주기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즉, 변동주기가 1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의 은행간 실제 콜거래수익률이 고려되고 변동주기가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민간채권평가사(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가 고시하는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에 은행의 예상 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은행의 조달원가는 가변적이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내부기준금리는 인상 또는 불변하거나 시장금리 하락폭에 비해 작게 인하될 수 있으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은행내부기준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항에 따른 적용금리 변경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에 의한 대출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 내 에 변경전 이율로 채무전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대출 해지의사 통보 후 1개월 내에 채무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대출이자율에 동의하고, 해지의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CD91일물 기준금리부여신이란 대출실행일과 변동주기에 따른 금리변경적용일 각각에 대해 전영업일자로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CD 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15시 30분 고시)을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은 제1조 대출이자율에서 약정한 금리변동주기마다 별도의 통보없이 변경되기로 합니다.

③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 여신이란 제1조 대출이자율에서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약정한 기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그 이후 고정금리 적용이 완료되어 은행내부기준금리 적용시에는 고객과 별도의 약정없이 본 약정서만으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은행내부기준금리부여신으로 변경합니다. 이 때 고정금리는 금리고정기간별 은행의 예상 또는 실제조달원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④ 수신금리부여신이란 고객의 예/적/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대출이자율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제 3 조 (추가대출)

제1조의 거래조건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거래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① 추가대출한도는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추가대출거래를 신청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중도상환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추가대출 신청일 현재 최초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거나 당초 상환계획에 따른 상환 금액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 ② 추가대출 신청은 은행 방문 또는 유선 (전화, 팩시밀리)연락에 의해 가능하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제3자(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추가대출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 ③ 추가대출금의 거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이자율, 대출기간만료일, 지연배상금률, 대출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의 계산방법, 상환방법, 이자 지급방법, 담보제공 등은 이 대출약정서 제1조의 거래조건과 동일하며, 기타 이 약정서의 제 조항이 추가대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 본인의 신청 후 은행은 대출을 승인하는 즉시 추가 대출신청서상의 지정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제 4 조 (대출실행) .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은 대출개시일까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실행됩니다. 다만, 은행은 다음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본인 및 담보제공자가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 및 장래 발생할 은행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를 제공기로 한 경우, 은행 소정기준에 따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예·적금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질권설정 등 제반 담보 제공이 완료될 것.
- ② 담보건물에 대하여 은행이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고 은행 앞으로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이 완료될 것.
- ③ 지급불능, 파산, 화의신청,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등 본인의 신용약화상태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④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따른 기한전 채무변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 ⑤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주택구입대출의 경우에 한합니다).
- ⑥ 은행 소정의 채권서류가 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되었을 것.

제 5 조 (중도상환) .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 ① 본인은 제1조에서 정한 대출금의 상환기일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②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되며, 중도상환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 ④ 위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1. 은행의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해 상환하게 하는 경우
 2.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은행의 일방적인 사정이나 요구에 의해 상환하는 경우
 3.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상환의 경우
 4. ()

제 6 조 (부대채무) .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감정료, 수입인시대, 기타 법적절차비용 등 대출관련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 본인은 은행이 지출한 비용에 제1조의 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은행의 청구시 즉시 변제하기로 하며 또한 은행이 이를 대출금에서 공제하여도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기간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본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본인은 계약해지일까지 납부 지체된 대출금 원금, 발생이자 및 동 금액들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합산금액과 본인이 실제 변제할 때까지 동 합산금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 ③ 은행이 채권보전, 채권회수 및 담보권실행 등을 위해 지출한 제반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전항의 손해배상금에 포함됩니다.

제 8 조 (담보, 보험) .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 ①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 ② 이 약정서에 의한 제반 채무 및 장래 발생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키로 한 경우, 본인은 『대출거래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③ 담보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제공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환가 처분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 ④ 처분된 담보물의 환가액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부족액이 있는 경우 본인은 그 금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 위 충당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은행은 이를 본인에게 곧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본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 적금, 상호부금, 신탁, 어음, 수표, 동산 및 기타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은행이 이를 처분, 추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5항에 준하여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합니다.

제 9 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 (이 약정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간연장, 개서, 갱신, 분할, 병합, 증액, 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

종별	증서(기)·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액 (계약액)	20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제 10 조 (임대차)

본인은 이 약정서상 대출을 위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건물에 관하여 타인에 대한 임대사실 유무를 제1조에 기재하며, 이와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담보권실행 등 제반 채권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이 약정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은행이 입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채권의 양도승낙) .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본인은 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 등을 위하여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함에 대하여 미리 승낙합니다.

제 12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 각 50% 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13 조 (채무승계) .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담보부동산 매매시 은행에 신고후 은행의 승낙을 받아 채무를 승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자·매도자 모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여채무를 연체하고 담보물의 처분가가 회수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은 매도인에게 잔여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였더라도 매도인의 기타 채무 연체를 사유로 은행은 매수인의 담보부동산을 강제집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또는 서명)	(인
----------------	----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담보제공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인지세 납부내역

- 대출금 4천만원 이하 면제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4만원
- 대출금 1억원 이하 7만원
- 대출금 10억원 이하 15만원
- 대출금 10억원 초과 35만원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대한민국 정부 인 지세 남대문세무서장 후 남 승인 2002년 26호